#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5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이성윤·추미애·전현희

양부남 · 김성환 · 김영환

장종태 • 김문수 • 박균택

김용민 • 민형배 • 황운하

서영석 • 박희승 • 박은정

차규근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또는 비리 범죄의 엄정한 처벌과 비대하고 정치화된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가지고 탄생함. 현재의 공수처는 인력난으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수사대상 범죄의 제한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수처 검사의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늘리고,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며(안 제8조제2항), 공수처 수사관의수를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면서 임기를 폐지하여(안 제10조), 우수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중도이탈을 막고자 함.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수사기관고위공직자)의 모든 범

죄를 공수처의 관할이 되도록 수사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4호).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수처 구성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수처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안 제13조제1항, 제22조제2항). 직무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의 공수처 고발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장기 방치 사건의 이첩권 남용을 제한하고,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검찰로 이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고(안 제24조), 수사기관 간 권한 경합의 조정, 중복수사의 방지 등을 위해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위해 국무총리 밑에 수사협의회를 두고 1개월에 1회 이상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공수처 업무의 특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공수처의 임면, 조직, 예산편성 자율 성을 보장함(안 제3조제3항, 제44조의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파목을 삭제한다.

다. 대법원장, 대법관 및 판사

카. 검찰총장 및 검사

제2조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하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포 함한다)
- 러.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

제2조제3호가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한정한다), 제355조부터"를 "한정한다), 제324조, 제350조, 제355조부터"로,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죄"로 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1조의 죄

4.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란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를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156조까지의 죄 및"을 "제156조까지 및 제362조의 죄,"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3호와 제4호의"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한다.

- 가.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형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죄
- 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와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죄
- 라.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그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제3조제1항 중 "다음 각 호"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로 하고, "(이하 "수사처"라"를 "(이하 "공수처"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한다.

③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공수

처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속기관) 공수처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수처 소속으로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사처"를 각각 "공수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수사처수사관"을 "공수처수사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수사처검사"를 각각 "공수처 검사"로 하며, 같은 조제1항 중 "7년 이상 변호사의"를 "변호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25명"을 "30명 이상 5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년"을 "7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수사처"를 "공수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수사처규칙"을 "공수처규칙"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사처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수사처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을 "공수처규칙에 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수사처수사관"을 각각 "공수처 수사관"으로, 같은 항 본문 중 "40명"을 "50명 이상 7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처수사관"을 "공수처수사관"으로,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을 "정

년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명"을 "60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차관"을 "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을 "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처구사관"을 "공수처 수사관"으로,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를 "검찰직공무원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을 "공수처 검사, 공수처수사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 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15조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며, "검사로"를 "검 찰청 검사로"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2항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고, 제6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19조 제목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을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고 "수사처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수사처수사관"를 "공수처 수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처수사관", "수사처검사"를 각각 "공수처 수사관", "공수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처수사관"을 "공수처 수 사관"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하며, "공무원"을 "공무원(공수처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수처 소속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의 제목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고,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고위공직자범죄의"를 "고위공직 자범죄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②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알게 된 때에는 공수처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특별감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 사 건에 대하여는 공수처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수사처규칙"을 "공수처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1항) 중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을 "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고, 수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그 수사기관에서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제5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⑤ 다른 수사기관이 제2항의 통보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한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은 제4항의 이첩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⑥ 공수처 검사가 먼저 수사에 착수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 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의 경우에 처장은 공수처에 접수된 지 3개월이 경과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수처가 이첩을 하고자 하는 상대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그 수사기관 및 공수처가 이첩을 하고자 하는 상대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⑨ 어떠한 경우에도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는 검찰로 이첩할 수 없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수사협의회) ① 공수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간 권한 경합의 조정, 중복수사의 방지, 수사 및 공소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밑에 수사협의회를 둔다.
  - ② 수사협의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 ③ 수사협의회장은 1년에 1회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수사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⑤ 수사협의회의 논의·협의·조정 대상과 수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수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협의회 밑에 수사협의실무지원단을 둔다.
- ⑦ 사무국과 수사협의실무지원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협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며, 제2항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고위공직자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등"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 중 "관련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 이외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31조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32조 중 "수사처검사"를 각각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를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를 "공수처에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수사처규칙"을 "공수처규칙"으로,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수사처"를 "공수처"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수사처규칙"을 "공수처규칙"으로,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43조 중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파견공무원"을 "파견공무원 등"으로 하고, 제44조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하며, "공무원"을 "공무원(다만, 검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4조의2와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임기제공무원) 공수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44조의3(예산회계) ①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 ② 공수처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공수처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수사처규칙"을 "공수처규칙"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사건의 대국민보고) 처장, 차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공수처 검사는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을 "공수처 검사 및 공수 처 수사관"으로 하며,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 「군사법 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형사소송절차에서 구금되었던 자로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	1
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	
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대법원장 및 대법관</u>	다. <u>대법원장, 대법관 및 판</u>
	<u>사</u>
라.~차. (생 략)	라.~차. (현행과 같음)
카. <u>검찰총장</u>	카. <u>검찰총장 및 검사</u>
타. (생 략)	타. (현행과 같음)
파. <u>판사 및 검사</u>	파. <u>&lt;삭 제&gt;</u>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이하 경찰청장 및 해양경
	찰청장을 포함한다)
거.~더. (생 략)	거.~더.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러. 「국가공무원법」제2조의
	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	3

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 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 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 가. 「형법」제122조부터 제1 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 우를 <u>포함한다.)</u>
-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
  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
  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
  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u>죄(다른 법률에</u>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생략)

라. <u>「변호사법」제111조의</u> <u>죄</u>

마.~아. (생 략)

<신 설>

가
·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나
최 기 최
<u>한정한</u>
다), 제324조, 제350조, 제3
55조부터
다. (현행과 같음)
라. 「변호사법」제109조 및
제111조의 죄
마.~아. (현행과 같음)
1.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란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

# 4. (생략)

-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제 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 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죄
- 자의 「형법」제133조, 제3 57조제2항의 죄
-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다. -----「형법」제151조제1항, 제 152조, 제154조부터 제156 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 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 한 법률 | 제14조제1항의 죄
-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 📗 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 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 직자가 범한 죄
-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 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	무원이	범한 죄를 말한다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가.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 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형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죄
-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나.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 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죄
  - --- 제156조까지 및 제362 조의 죄, -----
  - 라.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성 이 있는 범죄로서 그 고위 공직자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 과정에서 인지한 범 죄
    - 6. ---------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의 ----.

저	[3조(	교위	공직ス	<b>나범</b> 3	죄수시	·처의	설
	치와	독립	립성)	1	고위	공직ス	·범
	죄등	에 관	하여	다.	음 각	호에	필
	요한	직두	무를	수형	하기	위ㅎ	나여
	고위	공직기	자범죄	의수/	사처(	이하	"수
	사처'	'라 형	한다)	를 등	룬다.		

-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 | 1.~2. <삭 제> <u>사</u>
-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 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 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 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 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 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 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
치와 독립성) ①
<u>수사, 공소의 제기</u>
<u>및 그 유지</u> 에
<u>(이하 "</u> 구
<u>수처"라</u> )

- ② <u>공수처</u>는 -----
- ③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공수처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한다.

<u>4</u>	 	 
	 <u>공수처</u> 의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u>신</u> 설>

제4조(처장·차장 등) ① <u>수사처</u> 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u>수사처에 수사처검사</u>와 <u>수사</u> <u>처수사관</u> 및 그 밖에 필요한 직 원을 둔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건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② <u>수사처검사</u>는 특정직공무원 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 함하여 <u>25명</u> 이내로 한다.
- ③ <u>수사처검사</u>의 임기는 <u>3년</u>으 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 ④ <u>수사처검사</u>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인사위원회)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u>수사처검사</u>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수사처</u>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⑤ (생략)
  -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수</u> 사처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이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 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u>공수처 검사</u> 는
제	9조(인사위원회) ①
	<u>공수처 검사</u> 의
	<u>공수처</u> 에
	②~⑤ (현행과 같음)
	6
	<u>&amp;</u>
	<u>수처규칙</u> 으로
제	10조( <u>공수처 수사관</u> ) ① <u>공수처</u>
	<u>수사관</u> 은 <u>공수처규칙에 정한 자</u>
	<u>격과 경력을 갖춘</u>
	1.~3. <삭 제>

- ② <u>수사처수사관</u>은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고, <u>40명</u> 이내로 한 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 를 <u>수사처수사관</u>의 정원에 포함 한다.
- ③ <u>수사처수사관</u>의 <u>임기는 6년</u> 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u>수사처</u>의 지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u>2</u>0명 이내로 한다.
- 제12조(보수 등) ① 처장의 보수와 지대우는 <u>차관</u>의 예에 준한다.
  - ②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u>고위</u> <u>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u> 무등급의 예에 준한다.
  - ③ <u>수사처검사</u>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 ④ <u>수사처수사관</u>의 보수와 대우 는 <u>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u> 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② 공수처 수사관은
, <u>50명 이상 70명</u> -
- <u>공수처 수사관</u> 의
<b>.</b>
③ <u>공수처 수사관</u> 의 <u>정년은</u> 60
세로 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u>공수처</u> 의
② <u>6</u>
<u>0명</u>
제12조(보수 등) ①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u>장관</u> 의 예에 준한다.
대구는 <u>정단</u> 의 에에 군안다. ② 차관
② <u>小包</u>
<u>.</u>
· ③ 공수처 검사의
<u> </u>
④ <u>공수처 수사관</u> 의 보수와 대
<u> </u>
·····································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 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 다.

- 1.~4. (생략)
-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신 설>

# ② (생략)

-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 기 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 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 임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 하다.
- 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 수처 검사-----

, <u>공</u> 수처 검사,
공수처 수사관으로
1.∼4. (현행과 같음)
5
<u>3년</u>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
이 ㅠㄴ 다이시 치ㅂㅇ 사시ᅱ

- 원 또는 당원의 신문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 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신분보	.장)	 	 공
<u>수처</u>	검사-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u>공</u>

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 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생 략) ②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 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 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④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

----- <u>공수처 검사</u>---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공수처 검사----------검찰청 검사 ③ 공수처 검사-----④ <u>공수처</u>---------- <u>공수처</u>----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 공수처-----수처-----

다.

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 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

에	출	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
여	<b>)</b> }	한다.		

- ③ ④ (생 략)
- ⑤ 처장은 제8조에 따른 <u>수사처</u>검사의 직을 겸한다.
- ⑥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 재정법」제6조제2항에 따른 중 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① 지 (생 략)
  - ② 차장은 제8조에 따른 <u>수사처</u> 검사의 직을 겸한다.
- 제19조(<u>수사처검사</u>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① 처장은 <u>수사처</u> <u>검사</u>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 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처장은 <u>수사처검사</u>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u>수사처</u> <u>검사</u>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_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공</u> 수처	]
	_
<u> </u>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①	)
(현행과 같음)	
② <u>공</u> 수차	1
 검사	_
 제19조( <u>공수처 검사</u>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① <u>공수</u>	-
<u>처 검사</u>	_
	_
<b>.</b>	
② <u>공수처 검사</u>	_
<u>공</u> 수>	
검사	_
<u>.</u>	
제20조( <u>공수처 검사</u> 의 직무와 권	
 한) ① <u>공수처 검사</u> 는 <u>고위공</u> 직	
	_

한다.

- ② <u>수사처검사</u>는 처장의 지휘· 감독에 따르며, <u>수사처수사관</u>을 지휘·감독한다.
- ③ <u>수사처검사</u>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에 따른 지휘·감독 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 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1조(<u>수사처수사관</u>의 직무) ① <u>수사처수사관</u>은 <u>수사처검사</u>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 ② <u>수사처수사관</u>은 고위공직자 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u>수사처</u> 소속 <u>공무원</u>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수처 검사
, <u>공수처 수사관 및</u>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
<u> 무원</u>
③ 공수처 검사
제21조( <u>공수처 수사관</u> 의 직무) ①
<u>공수처 수사관</u> 은 <u>공수처 검사</u> 의
② 공수처 수사관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
립) <u>①</u> <u>공수처</u> 소속 <u>공무원(공수</u>
처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신 설>

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 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신 설>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

② 공수처 소속 공무원은 정당 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 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 제23조(공수처 검사의 수사) ① 공 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의 -----

②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중 고 위공직자범죄등을 알게 된 때에 는 공수처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국세청 · 금융 위원회 • 금융감독원 • 공정거래 위원회 · 특별감찰관은 고위공 직자범죄등 사건에 대하여는 공 수처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여 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수 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 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 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 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u>수사처</u>에 통보하여야 한 다.
-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 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 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 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건의 이
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수사
기관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고, 수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그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②
공수처
<u>·</u>
⑦ (현행 제3항과 같음)
②
<u>③</u>
マタン ココ
<u>공수처 규칙</u>

<신 설>

<u><</u>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⑤ 다른 수사기관이 제2항의 통보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 대한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은 제4항의 이첩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⑥ 공수처 검사가 먼저 수사에 착수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 수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의 경우에 처장은 공수 처에 접수된 지 3개월이 경과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수처가 이첩 을 하고자 하는 상대 수사기관 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른 수 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여 이첩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그 수사 기관 및 공수처가 이첩을 하고 자 하는 상대 수사기관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⑨ 어떠한 경우에도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는 검찰로 이첩할수 없다.
- 제24조의2(수사협의회) ① 공수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간 권한 경합의 조정, 중복수사 의 방지, 수사 및 공소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 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밑에 수사협의회를 둔다.

- ② 수사협의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 ③ 수사협의회장은 1년에 1회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수사협의회에 사무국을 둔 다.
- ⑤ 수사협의회의 논의・협의・ 조정 대상과 수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⑥ 수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 고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협의회 밑에 수사협 의실무지원단을 둔다.
- ⑦ 사무국과 수사협의실무지원 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수사협의회 규칙으로 정한 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 제25조(공수처 검사 및 검찰청 소 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처 속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 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 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 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 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 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 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 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 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① <u>공수처 검사</u>
②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등
<u>공수처</u>
<u>.</u>
<u>&lt;</u> 삭 제>

-- 고위공직자범죄 이외의 ---

이첩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① 수사처검사 제28조(형의 집행) ① 공수처 검사 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 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 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 가 그 형을 집행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제29조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 ----- 공수처 검사----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 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 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 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 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 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 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 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 장", "검사"는 "<u>수</u>사처검사"로 ----- "공수처 검사"--본다. 제31조(재판관할 등) 수사처검사 제31조(재판관할 등) 공수처 검사

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2조(징계사유) <u>수사처검사</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u>수사처검사</u>를 징계한 다.
  - 1. 2. (생략)
  -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u>수사처검사</u>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①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 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생략)
-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징계위원 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 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

<u>공수처 검사</u>
제32조(징계사유) <u>공수처 검사</u>
<u>공수처 검사</u>
1. • 2. (현행과 같음)
3
<u> 공수처 검사</u>
제33조( <u>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u> )
① 공수처 검사
검사징계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u>수사처규칙</u>으로 정하는 <u>수사처검사</u>가 위원장이 된다.

- ② (생략)
- 위원장이 지명하는 <u>수사처검</u>
   사 2명
- 2. (생략)
- ③ 예비위원은 <u>수사처검사</u>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된다.
- ④~⑥ (생략)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

- ① (생 략)
-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 사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한다.
- ③ (생 략)
-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징 제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u>수사처규칙</u>으로 정하는 <u>수사처검사</u>를 말한

<u>공수처규칙</u>
<u> 공수처 검사</u>
② (현행과 같음)
1 <u>공수처</u>
<u> 검사</u>
2. (현행과 같음)
③ <u>공수처 검사</u>
④~⑥ (현행과 같음)
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 공수처 검사, 공수</u>
<u>처</u>
<u>.</u>
③ (현행과 같음)
∥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
<u>공수처규칙</u>
공수처 검사

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구에 의하여시작한다.

② 처장은 <u>수사처검사</u>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③ (생략)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제36조에 따라 처장이 <u>수사처검사</u>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39조(퇴직 희망 <u>수사처검사</u>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처장은 <u>수</u> <u>사처검사</u>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 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 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 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① 고스티 기기
② <u>공수처 검사</u>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징계부가금) ①
<u>공수처 검사</u>
(원레크 기호)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 ( <u>공수처 검사</u>
<u>공수처</u>
) ① <u>81</u> <u>1</u>
<u>검사</u>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2조(징계의 집행) ① (생 략)

- ② <u>수사처검사</u>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 9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 터 제21조까지, 제22조(다만, 제 2항의 "제23조"는 "제42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 제44조(<u>파견공무원</u>) <u>수사처</u>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u>공무원</u>을 파견받을 수 있다.

<u><신</u> 설>

,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징계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수처 검사</u>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 <u>공수처 검사</u> "
제44조( <u>파견공무원 등</u> ) <u>공수처</u>
7 D Al / 3 . 3
<u>공무원(다만,</u>
<u>검사를 제외한다)</u>
제44조의2(임기제공무원) 공수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
<u> </u>
<u>공무원을 둘 수 있다.</u>

# <신 설>

-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u>수사처</u>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수사</u> <u>처규칙</u>으로 정한다.
-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 ② <u>수사처</u>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3(예산회계) ①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공수처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공수처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조직 및 운영)
공수처
 <u>공수처</u>
규칙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①
ア人引
<u>공수처</u>
② 공수처
<b>.</b>
제46조의2(사건의 대국민보고) 처
장, 차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
은 공수처 검사는 제2조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에 대하
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신 설>